

제주지방법원 2024. 8. 12 선고 2024가단63788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7. 15.

판 결 선 고 2024. 8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95,611,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4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, 2,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19. 11. 25. 주식회사 D(이하 'D'라고만 한다)에 280,000,000원을 변제기 2022. 11. 25.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, 피고는 D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날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336,000,000원을 한도로 근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,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95,611,2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 또는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.

그렇다면 피고는 D의 보증인으로서 남은 대여금 95,611,2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. 4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은성